

장:(5000)지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5000	지원및기타경비	43,303,964	40,482,425	2,821,539	[국 0 도 536,500 시 42,767,464 [분 0 교 0]
5200	제지출금	3,055,212	19,536	3,035,676	
5210	제지출금	3,055,212	19,536	3,035,676	
5211	제지출금	3,055,212	19,536	3,035,676	
400	예비비등	3,055,212	19,536	3,035,676	
420	기타	3,055,212	19,536	3,035,676	
	802 반환금기타	3,055,212	19,536	3,035,676	
		1,852,458	0	1,852,458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 = 9,323 ◎춘의청소년 수련관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36,838 ◎원미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 17,329 ◎기초생활보장급여 = 402,583 ◎자활근로사업비 = 101,721 ◎가사간병도우미사업(복권기금) = 19,719 ◎장애수당 = 26 ◎장애인 자녀교육비 = 1,379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 = 511
					◎장애인 생활시설 급여 = 2,232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421
					◎아동복지 시설급여비 = 194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 27,481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 1,160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소사주공) = 5,094
					◎경로연금 = 24,538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401
					◎노인복지시설 급여 = 9,553
					◎부천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 = 5
					◎여성폭력중사자교육 = 23
					◎여성복지시설급여 = 6,695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복권기금사업) = 245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복권기금사업) = 2,020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복권기금사업) = 175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국비) = 32,990
					◎생활체육교실 운영 = 554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 568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 78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13,429
					◎청소년수련관 = 5,239
					◎양곡관리 제경비 = 1
					◎FTA과원폐원 지원사업 = 48,617
					◎예방접종시술비 = 115
					◎학교우유 급식지원 = 49,300
					◎새해 영농 설계교육 = 10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 765
					◎쌀소득 보전직불제 = 470
					◎산불방지 = 1,774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산림병해충방제 = 242
					◎조림사업 = 696
					◎숲가꾸기사업 = 1,416
					◎교육훈련 강사수당 = 1,990
					◎통,리대장 교육비 = 39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 49
					◎방독면 보급 = 445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 = 3,926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운영차) = 927,505
					◎저공해자동차 보급 = 56,000
					◎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사업 이자수입 = 35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 12,637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 613
					◎긴급복지 지원사업 = 22,496
		1,183,218	0	1,183,218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7,333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 5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 = 3,351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 187
					◎지방세수증대활동비 = 39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 44
					◎원미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 4,332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 3,000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산업육성 = 26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 293
					◎제6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축제참가 지원 = 4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교육) = 50,323
					◎자활근로사업비 = 12,719
					◎차상위계층 출산비 = 3,300
					◎비수급빈곤층한시적생계구호 = 113,2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 = 1,050
					◎저소득층 연탄구입비 = 1,728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 731
					◎자활근로사업추진(도비사업) = 2,797
					◎자활후견기관중사자복지수당 = 1,126
					◎저소득장애인신문무료보급 = 186
					◎장애수당 = 6
					◎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 = 6,215
					◎도비장애수당 = 5,593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 45
					◎저소득중증장애인의료재활사업 = 652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 1,072
					◎청각언어장애인용화상전화기설치 = 824
					◎장애인생활시설운영 = 678
					◎장애인생활시설급여 = 27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사자수당 = 12,250
					◎개인운영복지시설운영비지원 = 4,106
					◎복지시설지원4종 = 8,036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장애인최적관람설치 = 7,604
					◎저소득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 241
					◎복지시설운영지원7종 = 3,771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지원 = 1,499
					◎아동전문 치료실(심리치료) = 2,730
					◎저소득층아동 특기교육(영어) = 8,000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튜터) = 17,900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 61,268
					◎꿈나무아동복지관 운영비 지원 = 14,413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2,439
					◎아동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 = 750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 5,050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 5,000
					◎시설아동 자립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 = 42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 = 1,596
					◎입양아동양육보조금 = 91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 26
					◎공휴일 아동급식(교육비특별회계) = 2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 13,741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 580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소사주공) = 2,547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 8,750
					◎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 1,000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 = 9,250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 150
					◎정부지원보육시설교재교구비 = 2,400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처우개선비 = 6,140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복리후생비 = 3,045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 420
					◎경로연금 = 5,302
					◎노인교통비 = 21,306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월동난방비지원 = 4,026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257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200
					◎주간보호신규시설 운영지원 = 314
					◎노인복지시설급여 = 1,195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이양) = 10,673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 41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이양) = 6,274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15,597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 = 869
					◎부천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 = 3
					◎노인건강진단(이양) = 175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 12
					◎여성복지시설급여 = 838
					◎가정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 50
					◎모자복지시설지원 = 742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도비) = 13,063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청소년 순회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 14
					◎생활체육교실 운영 = 647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 284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 1,000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금 = 1,501
					◎제14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 = 468
					◎청소년공부방 운영(도비) = 3,687
					◎청소년수련관 건립 = 8,732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 86,575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 5,474
					◎영세농업인 고등학생 학비보조 = 1,035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 113
					◎학교우유 급식지원 = 10,564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 1
					◎친환경농업인증 검사비 지원 = 276
					◎산불방지 = 1,313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산림병해충방제 = 37
					◎조림사업 = 209
					◎숲가꾸기사업 = 464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 2,100
					◎학교숲조성 = 38,427
					◎교육훈련 강사수당 = 1,659
					◎통,리대장 교육비 = 84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 54
					◎방독면 보급 = 341
					◎민방위시범마을 = 66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 16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 = 1,963
					◎수도권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 20,591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운행차) = 463,753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 = 1,580
					◎긴급복지 지원사업 = 2,812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400)예비비

항:(5410)예비비

세항:(5411)예비비

세세항:(410)예비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5400	예비비	9,799,752	10,013,889	△214,137	
5410	예비비	9,799,752	10,013,889	△214,137	
5411	예비비	9,799,752	10,013,889	△214,137	
400	예비비등	9,799,752	10,013,889	△214,137	
410	예비비	9,799,752	10,013,889	△214,137	
	801 예비비	9,799,752	10,013,889	△214,137	◎예비비 경정(9,799,752,000원)-기정(10,013,889,000원) = △214,137
세 출 합 계		503,627,151	395,802,904	107,824,247	
일 반 회 계 세출총계		680,440,838	560,141,038	120,299,800	

장:(5000)지원및기타경비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5000	지원및기타경비	322,812	0	322,812	
5200	제지출금	322,812	0	322,812	
5210	제지출금	322,812	0	322,812	
5211	제지출금	322,812	0	322,812	
400	예비비등	322,812	0	322,812	
420	기타	322,812	0	322,812	
	802 반환금기타	322,812	0	322,812	
		237,692	0	237,692	01 국고보조금반환금
					◎한방지역보건사업 = 1,841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24,498
					◎보건소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사업보조임 = 12
					◎보건소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사업 = 55
					◎전염병관리실무과정교육여비 = 65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6,472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 5,136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15,360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사업 = 2
					◎불임부부지원 = 112,914
					◎노인의치보철사업 = 50
					◎암환자의료비지원 = 96
					◎암조기검진사업 = 380
					◎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 = 47
					◎성병검진및치료비 = 1
					◎에이즈환자치료비 = 18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 1,494
					◎주요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 = 190
					◎국가예방접종사업 = 52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 352
					◎재활운동처방실소모품 = 22
					◎재활치료환자재활운동상담비 = 700
					◎건강생활실천사업보조인부임 = 1,172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보건생활실천사업보조인부임 = 161 ◎건강증진교육훈련비 = 77 ◎금연클리닉운영 = 66,052
		85,120	0	85,120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12,249 ◎전염병관리실무과정교육여비 = 65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4,853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 3,852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사업 = 1 ◎불임부부지원 = 56,458 ◎암환자의료비지원 = 48 ◎암조기검진사업 = 187 ◎주요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 = 190 ◎국가예방접종사업 = 263 ◎공공보건의료기관의료장비지원 = 1,881 ◎구강보건실운영비 = 56

장:(5000)자원및기타경

관:(5200)제지출금

항:(5210)제지출금

세항:(5211)제지출금

세세항:(420)기타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운영비 = 2,349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 = 15
					◎방문보건및노인건강관리장비지원 = 3
					◎방문보건간호용품구입비 = 32
					◎방문보건자원봉사자관리 = 38
					◎민간자율방역단방역약품지원 = 901
					◎영유아수두예방접종사업 = 22
					◎B형간염고위험군예방접종사업 = 1,657
세 출 합 계		4,568,271	5,239,855	△671,584	
일 반 회 계 세출총계		680,440,838	560,141,038	120,299,800	